

## 감리지적사례 FSS/1912-24 :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 쟁점분야 : 수익 인식
- 관련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09.12.31.~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N사는 여러 판매경로(백화점, 대형마트, 개인 소매점 등)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소매점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재화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계약서상 반품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소매점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N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미판매 재화는 통상 주기적으로 반품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문단 15에 따르면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③ 문단 21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2)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3)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④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N사가 소매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소매점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하여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④ 회사의 판매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올바르게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외부감사인은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파악하거나 비교해보지 않았다.

⑤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인식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 **5.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회계처리하는 일부 관행이 회계처리기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 감사인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판매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있는 경우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회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상황에 부합되는 질의회신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